

#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용석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493
----------	------

발 의 년 월 일 : 2021년 05월 28일

발 의 자 : 김용석, 김제리, 김희걸,  
박기재, 박상구, 서윤기,  
송명화, 송아량, 양민규,  
이영실, 이태성, 임종국,  
장상기, 전석기, 최 선,  
홍성룡, 황규복 의원(17  
명)

## 1. 제안이유

-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위원회 기능 강화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가명정보 처리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공공데이터 보호 및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가명처리” 용어 정의(안 제2조제1의2호) 및 개인정보 수집 시 가명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근거 신설(안 제3조제6항, 제13조의2).
-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는 조항 신설(안 제3조의2).
- 다. 개인정보 관리·감독 기관을 “행정안전부”에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 변경함(안 제6조, 제7조).

라. 위원회 기능을 추가 신설하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구성위원을 증가하고, 위원장을 당연직에서 “위촉직 위원 중 호선(互選)”으로 변경하며, 당연직 부위원장 1명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지정함(안 제10조, 제11조).

마.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소위원회 조항 신설(안 제12조의1).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가명처리”란 법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처리를 말한다.

제3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목적 달성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으로,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다른 조례와의 관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의2제2항 중 “수립하며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수립하며,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6조 중 “행정안전부”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 한다.

제10조의 본문 중 “심의하기”를 “심의·자문하기”으로 하고, 제10조제4호를 제7호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7.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

제10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가명정보의 적합성 및 적정성 검토 등 가명정보처리에 관한 사항
5.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관계기관·단체 등의 의견 수렴·전달 및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6. 개인정보 보호 우수사례 공유

제11조제1항 중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을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5명”으로 하고, 제11조제2항제1호 중 “조례 제5조의”를 “제5조의”로 하고, 제11조제2항제6호를 제9호로 한다.

제11조제2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데이터 활용 전문가 또는 개인정보 가명처리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자치구의 개인정보보호 총괄 관련 국장(4급)
8. 서울시 소재 주요 공공기관, 기업, 단체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당연직 부위원장 1명은 제5조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부위원장이, 부위원장 또한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를 “위촉직 부위원장, 당연직 부위원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하고, 제2항 중 “연 1회”를 “연 2회”로 한다.

제12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⑤ 심의 안건이 긴급을 요하거나 유사·반복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하거나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소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서면 심의의 경우 전자적 처리방법에 따라 심의할 수 있다.

제12조제6항 중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을 “개인정보 보호업무 관련 부서장”으로 하여 제7항으로 하고, 제12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제10조제5호 및 제6호와 관련하여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고, 위원회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12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한다.

제12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1(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의결을 거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가명정보의 적합성 및 적정성 검토 등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2.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중 긴급을 요하거나 유사·반복되는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 위원장이 소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소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④ 소위원회 회의는 구성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소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은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⑥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필요시 관계공무원(개인정보 총괄부서장, 가명처리 수행부서장)을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가명정보의 처리 등) ① 시장은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

③ 가명정보 처리업무 세부절차 및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발간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데이터 이용 활성화 및 안전한 활용을 통한 시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 제28조의3의 전담 결합전문기관을 정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생략)</p> <p><u>&lt;신설&gt;</u></p> <p>2. ~ 5.(생략)</p> <p>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p> <p>① ~ ⑤ (생략)</p> <p>⑥ <u>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익명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u></p> <p>⑦ (생략)</p> <p><u>&lt;신설&gt;</u></p> <p>제4조의2(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수립) ① (생략)</p> <p>② 기본계획은 자치구, 투자출연기관</p>	<p>제2조(정의) ----- -----.</p> <p>1. (현행과 같음)</p> <p><u>1의2. “가명처리”란 법 제2조제1의2 호에 따른 처리를 말한다.</u></p> <p>2. ~ 5.(현행과 같음)</p> <p>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p> <p>① ~ ⑤ (현행과 같음)</p> <p>⑥ <u>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으로,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u></p> <p>⑦ (현행과 같음)</p> <p><u>제3조의2(다른 조례와의 관계)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u></p> <p>제4조의2(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수립)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등의 개인정보 보호 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며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6조(개인정보파일 등록) 시장은 법 제32조에 따른 개인정보 파일 운용현황을 행정안전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대책)

① ~ ② (생략)

③ 시장은 1천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서면 등의 방법과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보 주체가 알아보기 쉽도록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7일 이상 게재하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 및 조치 결과를 지체없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전문기관(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 3. (생략)

-----  
--- 수립하며,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제6조(개인정보파일 등록)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제7조(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대책)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

제10조(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심 의·자문하기-----

1. ~ 3. (현행과 같음)

<p>&lt;신설&gt;</p>	<p>4. <u>가명정보의 적합성 및 적정성 검토 등 가명정보처리에 관한 사항</u></p>
<p>&lt;신설&gt;</p>	<p>5. <u>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관계기관·단체 등의 의견 수렴·전달 및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u></p>
<p>&lt;신설&gt;</p>	<p>6. <u>개인정보 보호 우수사례 공유</u></p>
<p>4.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u>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u></p>	<p>7. ----- -- <u>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u> --</p>
<p>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u>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p>	<p>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 ----- <u>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5명</u> -----.</p>
<p>② (생략)</p>	<p>② (현행과 같음)</p>
<p>1. <u>조례 제5조의</u> -----</p>	<p>1. <u>제5조의</u> -----</p>
<p>2. ~ 4. (생략)</p>	<p>2. ~ 4. (현행과 같음)</p>
<p>&lt;신설&gt;</p>	<p>6. <u>데이터 활용 전문가 또는 개인정보 가명처리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u></p>
<p>&lt;신설&gt;</p>	<p>7. <u>자치구의 개인정보보호 총괄 관련 국장(4급)</u></p>
<p>&lt;신설&gt;</p>	<p>8. <u>서울시 소재 주요 공공기관, 기업, 단체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u></p>
<p>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p>	<p>9. ----- -----</p>
<p>③ <u>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서 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u></p>	<p>③ <u>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당연직 부위원장 1명은 제5조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한다.</u></p>

④ ~ ⑤ (생략)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부위원장 또한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한다.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제9조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의가 필요한 경우나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 ④ (생략)

⑤ 심의 안건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을 요하여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한다. 이 경우 전자적 처리방법에 따라 심의할 수 있다.

<신설>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  
-----  
-----  
----- 위촉직 부위원장, 당연직 부위원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  
----- 연 2회 -----  
-----  
-----  
-----  
-----.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심의 안건이 긴급을 요하거나 유사·반복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하거나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소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서면 심의의 경우 전자적 처리방법에 따라 심의할 수 있다.

⑥ 제10조제5호 및 제6호와 관련하여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고,

⑥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이, 서기는 개인정보보호팀장이 담당한다.

⑦ 회의록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규정된 개인정보 외에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신설>

위원회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⑦ -----  
-----  
개인정보 보호업무 관련 부서장-----  
-----.

⑧ -----  
-----  
-----  
-----  
-----.

⑨ -----  
-----  
-----  
-----  
-----.

⑩ -----  
-----.

제12조의1(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결을 거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가명정보의 적합성 및 적정성 검토 등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2.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중 긴급을 요하거나 유사·반복되는 사항

<신설>

3. 그 밖에 위원회 위원장이 소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소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④ 소위원회 회의는 구성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소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은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⑥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필요시 관계공무원(개인정보총괄부서장, 가명처리수행부서장)을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3조의2(가명정보의 처리 등) ① 시장은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

③ 가명정보 처리업무 세부절차 및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발간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데이터 이용 활성화 및 안전한 활용을 통한 시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 제28조의3의 전담 결합전문기관을 정할 수 있다.

문서번호	2021052000000004
------	------------------

## 미첨부 사유서 (1호)

요청인 : 김용석 의원	담당 : 조도형 과장 이정수 팀장 백소영 주무관
접수일 : 2021. 05. 20.	내용문의 : 02-2180-7954
회신일 : 2021. 05. 26.	

###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목 차

1. 비용발생 요인
2. 미첨부 근거 규정
3. 미첨부 사유
4. 작성자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Seoul Metropolitan Council

##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조(위원회의 운영)제6항, 제12조의1(소위원회)을 신설함에 따라 비용 발생

※ 같은 조례안 제11조(위원회의 구성)제1항이 개정됨에 따라 위원회 구성 인원이 15명 이내에서 25명 이내로 증가하고, 정기회도 연 1회에서 연 2회로 증가하였으나, 2021년 예산이 위원 15명, 연 2회 개최로 편성되어있으므로 비용추계에서 제외

과목구분	2021년 예산
사무관리비	○ 개인정보보호 심의위원회 3,125,000원*2회  = 6,250천원

자료 : 2021년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 예산서 및 사업별설명서 제작성

##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제3조제1항제1호)

나. 추계결과 ≒ 40,30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40,300천원으로 연평균 8,060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실무협의회 구성 인원은 11명으로 하고, 실무협의회는 연 2회 개최를 전체 하며 참석수당 지급 위원은 담당공무원 1명, 시의원 1명을 제외한 9명을 기준으로 추계

※ 실무협의회 구성 인원 및 개최 횟수는 서울시 행정국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비 중 실무협의회 구성 인원 및 개최 횟수를 준용

- 소위원회는 안 제12조의1에 따라 구성 인원은 5명으로 하고, 회의는 연 4회 개최를 전제하며, 참석수당 지급 위원은 위원장(담당국장) 1명을 제외한 4명을 기준으로 추계

- 비용은 2021년부터 발생하고 추계기간 이후에도 계속 발생

- 물가상승률 미반영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 비용(합계) ≃ 40,300천원

$$\begin{aligned} \text{총비용} &= \text{실무협의회 운영 비용} + \text{소위원회 운영 비용} \\ &= 21,300\text{천원} + 19,000\text{천원} \end{aligned}$$

(단위 : 천원)

연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합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실무협의회 운영 비용 (제12조제6항)	4,260	4,260	4,260	4,260	4,260	21,300
	소위원회 운영 비용 (제12조의1)	3,800	3,800	3,800	3,800	3,800	19,000
	소계(b)	8,060	8,060	8,060	8,060	8,060	40,300
	총비용(b-a)	8,060	8,060	8,060	8,060	8,060	40,300

$$1) \text{실무협의회 운영 비용} = \sum_{i=1}^5 (\text{연간실무협의회운영비용})_i$$

$i$  = 비용추계 연차(2021년~2025년)

- 연간 비용 ≃ 4,260천원

≃ 참석수당 + 업무추진비

≃ (200천원 × 9명 × 2회) + (30천원 × 11명 × 2회)

※ 지급인원 : 참석수당은 담당공무원 1명, 시의원 1명을 제외한 9명, 업무추진경비는 11명을 기준으로 추계

$$2) \text{소위원회 운영 비용} = \sum_{i=1}^5 (\text{연간소위원회운영비용})_i$$

$i$  = 비용추계 연차(2021년~2025년)

- 연간 비용 ≃ 3,800천원

≃ 참석수당 + 업무추진비

≃ (200천원 × 4명 × 4회) + (30천원 × 5명 × 4회)

※ 지급인원 : 참석수당은 담당국장(공무원) 1명을 제외한 4명, 업무추진경비는 5명을 기준으로 추계

< 협의회 및 위원회 운영비용 추계 기준 >

- ※ 참석수당 단가 : 「서울특별시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수당의 종류 및 지급액)에 따라 기본료 15만원을 준용하고, 위원회가 2시간을 초과하여 진행된다고 가정하여 초과비용 5만원을 포함
- ※ 업무추진비 단가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 [별표1]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7조 관련)에 따라 3만원 수준으로 적용

####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조도형

사업평가팀장      이정수

주    무    관      백소영

☎ 02-2180-7954

e-mail : thdud36@seoul.go.kr